

12. '18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

□ 예비비사용 내용 및 사유

① 긴급복지 지원(지역돌봄복지과)

- 사업개요 : 갑작스런 위기가구 지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- 금 액 : 1,383백만원
- 사 유 : 경기 침체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증가로 보건복지부 추가 변경내시 통보(2,766백만원)
- 지 출 일 : 2018.12.11. / 예산과목 : 자치단체경상보조금

② 기초연금 지급(어르신복지과)

- 금 액 : 3,530백만원
- 사 유 : '18. 9월 기준연금액 인상(209,960원→250,000원) 및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(보건복지부) 시비 매칭분 확보

(단위 천원)

구분	*예산현액	집행액 (~11월)	집행잔액 (A)	12월 집행 예정액(B)	과부족(예비비) (C=A-B)
계	1,568,732,367	1,425,856,518	142,875,849	146,405,809	3,529,960
국비	1,324,682,976	1,201,266,479	123,416,497	123,416,497	-
시비	244,049,391	224,590,039	19,459,352	22,989,312	3,529,960

*국비 변경내시 18,053,790천원(11월 간주처리) 포함

- 지 출 일 : 2018.11.27. / 예산과목 : 자치단체경상보조금

□ 예산전용 내용 및 사유

- 사업개요 :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및 노숙인 의료서비스 지원 후 청구된 의료비 지급
- 금 액 : 867백만원
- 사 유 : 2018년도 4분기 노숙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예산 부족액 전용 (연초 3,791백만원 → 4,658백만원, 867백만원 증)
- 전 용 일 : 2018.12.14
- 전용과목 : 노숙인의료지원(자산 및 물품취득비(405-01)→의료 및 구료비(307-01))